

본회의장 의석 배정

○ 의석배정기준 : 초선·재선순으로 하되 의원의 연령순으로 배정
단, 의장 의석은 회의장 맨 뒷열에 배정

○ 의석배정표

| | | | |
|--------|----------|----------|-------------------|
| 연 단 | | | |
| 우 좌 | ④ 옥영복 | ③ 김정량 | ② 안채호 |
| | ⑤ 노승중 | ⑥ 김성오 | ① 한승정 |
| | ⑦ 박일훈 | ⑧ 박혜순 | |
| | ⑩ 최도년 | ⑪ 김연수 | ⑨ 임일심 |
| | ⑬ 김홍남 | ⑭ 이현택 | ⑮ (의장석) 지근수 |
| | | | ⑯ |
| | 입 구 | | |

=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12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8. 8. 29
- 다. 상 정 일 자 : 제16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08. 9.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노선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변경(안 제2조)

| 구 분 | 계 | 집행기관 정원 | 의회사무국 정원 |
|-----|-------|---------|----------|
| 현 재 | 729명 | 713명 | 16명 |
| 조 정 | 698명 | 683명 | 15명 |
| 증·감 | 감 31명 | 감 30명 | 감 1명 |

○ 한시정원인 직급별 정원삭제(안 제3조의2)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 1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정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나. 정원조정의 기본방향은

구 전체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기관별,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아래 정원조정의 기준은 행정여건, 행정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한시인력을 정리한 것임

다. 실제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대로 총정원의 4.2%인 31명을 감축하였고 (729명→698명)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13명→683명으로 30명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16명→15명으로 1명 감축하였음.

라. 이러한 정원 감축은

부산시 16개 구·군 평균 감축율 4.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우리구는 성장가속 지역으로 현안업무가 많을 뿐 아니라 행정대상의 핵심요소인 인구도 대규모APT 입주 등으로 증가 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번 정원감축으로 앞으로 인력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마. 본 조례 개정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정원감축에 따른 업무차질과 초과현원 관리에 따른 마찰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시행일은 그동안 심의보류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붙임 : 수정안 대비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 개정안 | 수정안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08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 부터</u> 시행한다. |

※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8. 26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8. 8. 29
- 다. 상 정 일 자 : 제16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08. 9.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노기섭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사하구만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간 주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축제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추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3조,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문화예술전문가, 의장추천 구의원, 문화예술관계 공무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구의원과 공무원은 보직기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재원 및 회계, 수당 등(안 제10조)

- 국·시비 및 구비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운용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제정 안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참여로 우리구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자율참여 유도 및 민·관이 함께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하구 축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나. 적법성 부문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 위임을 명시하고 있음.

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운영에는 재정적 부담이 없으나 문화예술, 축제 행사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의 자연환경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짐.

라.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붙임 : 수정안 대비표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30</u> <u>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① ----- ----- <u>20</u> <u>명</u> 이내-----. |

※ 여타부분은 제정안과 같음